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06. 04. 14. 규정 제3호
개정	2008. 03. 18. 규정 제25호
전문개정	2009. 07. 13. 규정 제39호
개정	2020. 05. 13. 규정 제209호
개정	2025. 06. 19. 규정 제27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그 적용에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이사회 운영) ①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사회 소집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부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긴급 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정관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06. 19.>

제4조(이사회 사무관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진흥원 이사회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사진행) ① 부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의안의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 06. 19.>

제6조(수당·활동비·여비지급 등) ① 이사회에 참여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출장, 감사 등 진흥원 업무에 따른 비용발생

시 진흥원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05. 13.>

③ 기타 이사회 임원에 대한 수당, 활동비, 여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6. 04. 14. 규정 제3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3. 18. 규정 제25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7. 13. 규정 제39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5. 13. 규정 제2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6. 19. 규정 제2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사회 소집 통보서

수 신 : 전 임원

정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년도 제 회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 장 소 :

○ 부의안건

1.

2.

○ 기타사항

년 월 일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회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일 자	. . . (제 회)	

안건명 : (안)

제 안 자	
제 안 일	. . .

제 호 의안 : -----(안)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별지 제3호 서식)

서 면 결 의 표

제 회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안번호	제 목	결 의		의 견
		찬 성	반 대	